

김해시 고시 제2023-74호

소하천구역의 결정(변경·폐지)에 관한 고시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·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(변경·폐지)하였음을 고시하며, 관계서류(토지세목, 지형도면)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3월 20일

김 해 시 장 (직인)



| 수계(水系)명 | 소하천명 | 소하천구역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
|         |      | 지번 및 지목                 | 면적(m <sup>2</sup> ) | 결정(변경·폐지) 사유   |
| 낙동강     | 송정천  | 진례면 송정리<br>176답 외85필지   | 14,399              | 변경<br>(사유 : 김해진례<br>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<br>공급촉진지구 구성에<br>따른 변경) |
|         | 송정천  | 진례면 송정리<br>176-1답 외48필지 | 3,659               | 폐지<br>(사유 : 김해진례<br>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<br>공급촉진지구 구성에<br>따른 변경) |

- 첨부서류: 1. 소하천구역으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사  
2. 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